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문화재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고속국도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,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(자연지명, 인공지명, 문화재, 도로명, 행정구역, 행정기관)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고속국도의 관광지표지 설치위치를 현행 인터체인지(IC) 500m 전방에서 1.5km 전방으로 변경(안 제17조)
- 나. 고속국도의 1개의 인터체인지(IC)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 수를 현행 3개 이하에서 4개 이하로 변경(안 제17조)
- 다.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안내지명 특성에 따라 6개 항목(자연지명, 인공지명, 문화재명, 도로명, 행정구역명, 행정기관명)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적용기준을 제시(안 별표 9)
- 라.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존 안내지명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지정문화재,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유발교통량,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계속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 18)
- 마. 다양한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다소 우수한 조명식 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함(안 별표 19)
- 바. 도로명 안내방식의 지점명 안내 글씨 크기 확대(22cm→24cm)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변경(안 별표 22)

사. 표지판, 글자 및 지주의 규격에 관광지표지를 신설(안 별표 25)

아.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광지표지를 신설(안 별표 26)

자. 재검토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 중 “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(IC) 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”를, “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(IC) 출구의 1.5k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

제17조제8항 중 “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.”를 “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4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별표 9 1. 기본원칙 중 “아. 정부조직 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정부기구도표에 따른다”를 “ 아. 자연지명, 인공지명은 「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」을 따르도록 하며, 문화재명은 「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」,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, 행정구역명은 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, 행정기관명은 「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」, 정부기관명은 「정부조직 영어 명칭 규칙」의 정부기구도표를 따른다.” 로 변경한다.

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9의 3. 적정 설치위치 중 “특히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타 광원에 비해 다소 우수한 내부조명식

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.”를 “특히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다소 우수한 조명식 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”로 한다.

별표 22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5 표지판, 글자 및 지주의 규격에 관광지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6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광지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「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 예규 제232호)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[별표 18]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(제17조제2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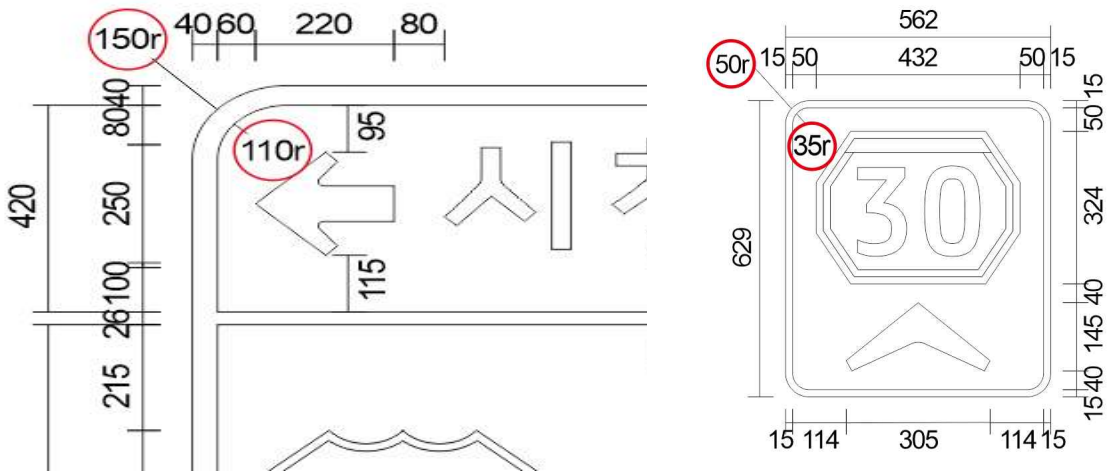
| 관광지의 종류 | 도로별구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| 고속국도 외 | 고속국도 |
|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| ○ | ○ |
|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| ○ | |
|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| ○ | ○ |
|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, 군립공원 | ○ | |
|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| ○ | |
|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| ○ | ○ |
|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| ○ | ○ |
|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| ○ | ○ |

주) 2017.12.31. 이전 고속국도에서 안내지명으로 사용되어 온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은 운전자의 혼란방지, 유발교통량,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계속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

[별표 22]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(제24조제1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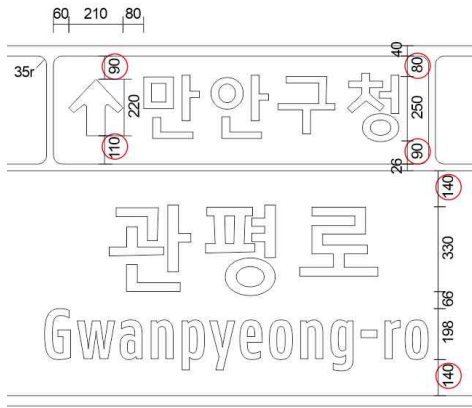
1. 테두리 표준도안

테두리선의 굵기가 40mm인 경우는 모서리의 바깥쪽 150r, 안쪽 110r로 하며, 테두리선의 굵기가 15mm인 경우는 바깥쪽 50r, 안쪽 35r로 한다. 예시와 같이 둥근 모양으로 처리한다.(표지판 제단도 동일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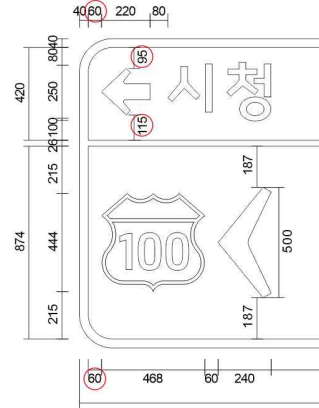


2. 글자, 숫자 및 기호의 배치

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 여백을 동일하게 배치하며, 좌우테두리선과의 간격은 60mm로 한다.



<상하여백 배치방법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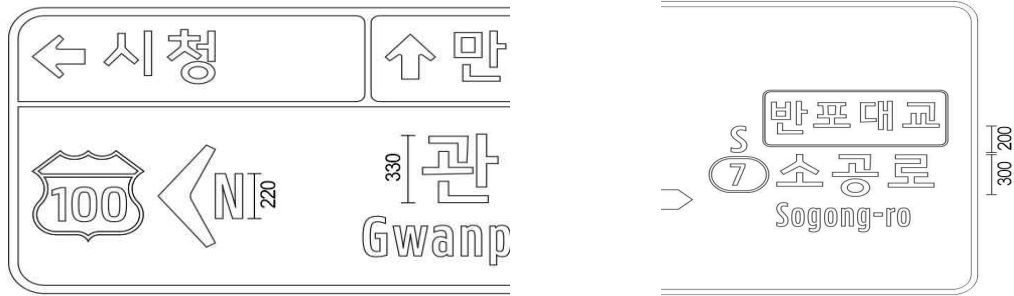
<테두리선과의 간격>

도로명을 안내하는 화살표와 테두리선 사이 노선번호 표기가 없어 여백 확보가 가능한 때에는 화살표와 테두리선 사이의 간격을 3방향 도로명(예고) 표지는 400mm로, 2방향 도로명 (예고)표지는 300mm로 한다. 다만, 여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

3. 방위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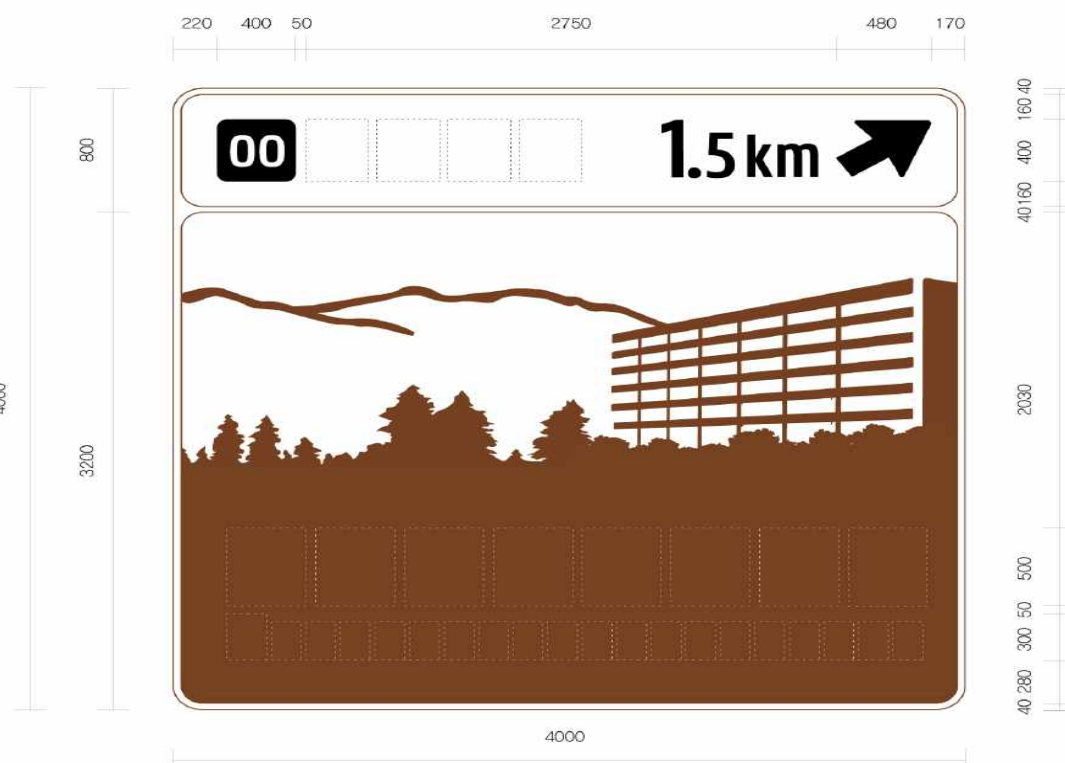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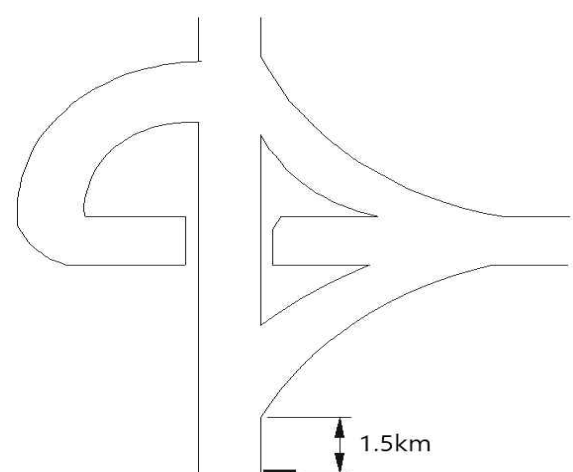
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에서 안내하는 도로가 주요간선도로로서 시종점이 남북방향 혹은 동서방향으로 일정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를 안내하는 화살표와 도로명 사이에 표기한다. 방위표기의 크기는 도로명을 안내하는 한글 세로높이의 2/3 크기로 한다.



[별표 25] 표지판, 글자 및 지주의 규격 (제38조제1항 관련)

| 구분 | 표지 번호 | 종별 | 지주 형식 | 표지판의 규격(cm) | 글자의 세로규격 (cm) | 지주의 규격(mm)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단주식 복주식 | 편지식 | |
| | | | | | | | 지주 | 가로재 |
| 관광지 표지 | 438-1 | 관광지표지 | 복주식 편지식 | 400×400 | 50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2 | | | | | (7.0) | (16.0) | (8.2) |
| | 438-3 | | | |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4 | | | | | (7.0) | (16.0) | (8.2) |
| | 438-5 | | | |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6 | | | | | (7.0) | (16.0) | (8.2) |
| | 438-7 | | | |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8 | | | | | (7.0) | (16.0) | (8.2) |
| | 438-9 | | | |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10 | | | | | (7.0) | (16.0) | (8.2) |
| | 438-11 | | | | | 216.3 | 406.4 | 216.3 |
| | 438-12 | | | | | (6.0) | (16.0) | (8.0) |
| | 400×480 | 40 | 267.4 | 406.4 | 267.4 | (6.0) | (16.0) | (6.6) |

[별표 26]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(제38조 제2항 관련)

| | |
|-----------|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1 관광지표지 (관광단지·제1,2종 종합휴양업/ 리조트) |
| 상세규격 | 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인터체인지 출구의 1.5k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단독 설치한다. ◦ 표지 상단에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. 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2 관광지표지 (관광단지·제1,2종 종합휴양업/ 스키장) |
| 상세규격 | |
|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|
| <p>°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|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3 관광지표지 (관광단지·제1,2종 종합휴양업/ 워터파크) |
|-----------|---|

| | |
|------|--|
| 상세규격 | |
|------|--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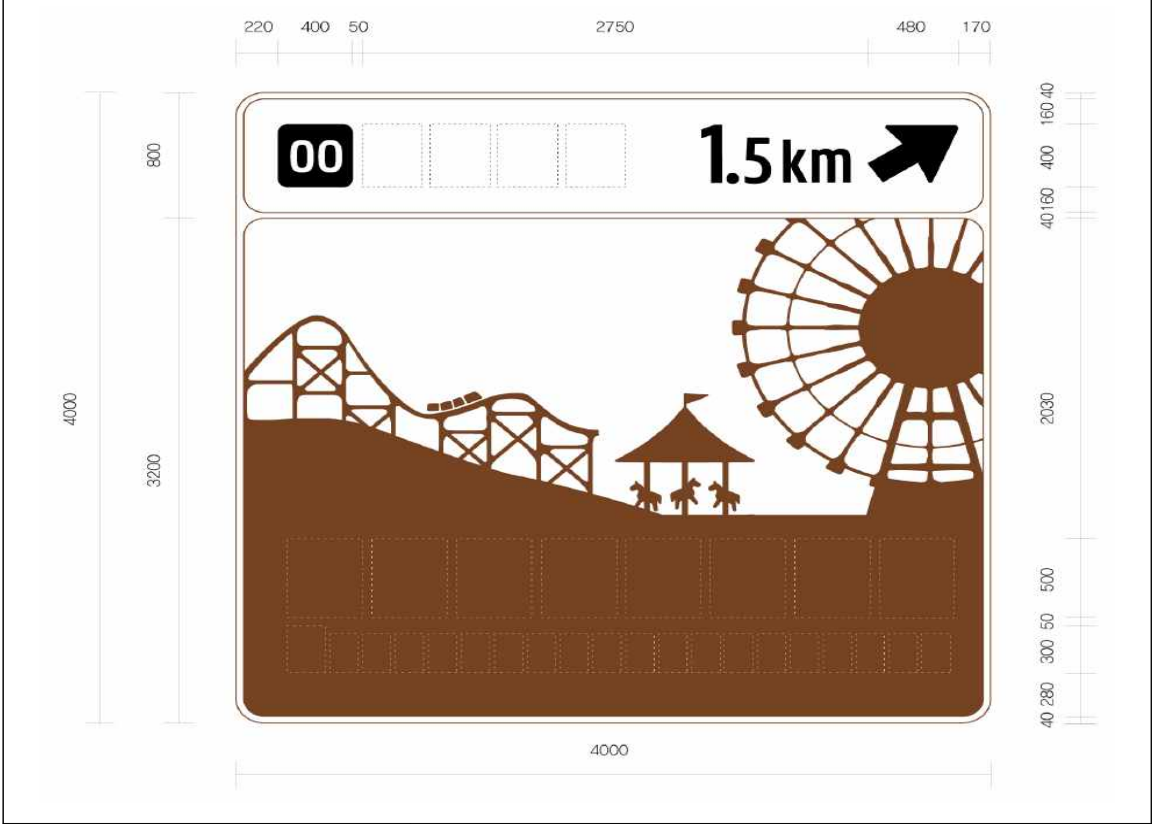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|--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|
|-----------|--|

◦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

비고

| | |
|-----------|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4 관광지표지 (관광단지·제1,2종 종합휴양업/ 놀이시설) |
|-----------|---|

| | |
|------|--|
| 상세규격 | |
|------|--|



| | |
|-----------|--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|
|-----------|--|

•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

비고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5 관광지표지 (국립공원/ 산악형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

| | |
|-----------|--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|
|-----------|--|

◦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

| | |
|----|--|
| 비고 | |
|----|--|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6 관광지표지 (국립공원/ 바다형) |
| 상세규격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p>°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7 관광지표지 (세계문화유산/ 사찰) |
| 상세규격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p>°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8 관광지표지 (세계문화유산/ 왕릉) |
| 상세규격 | |
|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|
| <p>◦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 |
| 비고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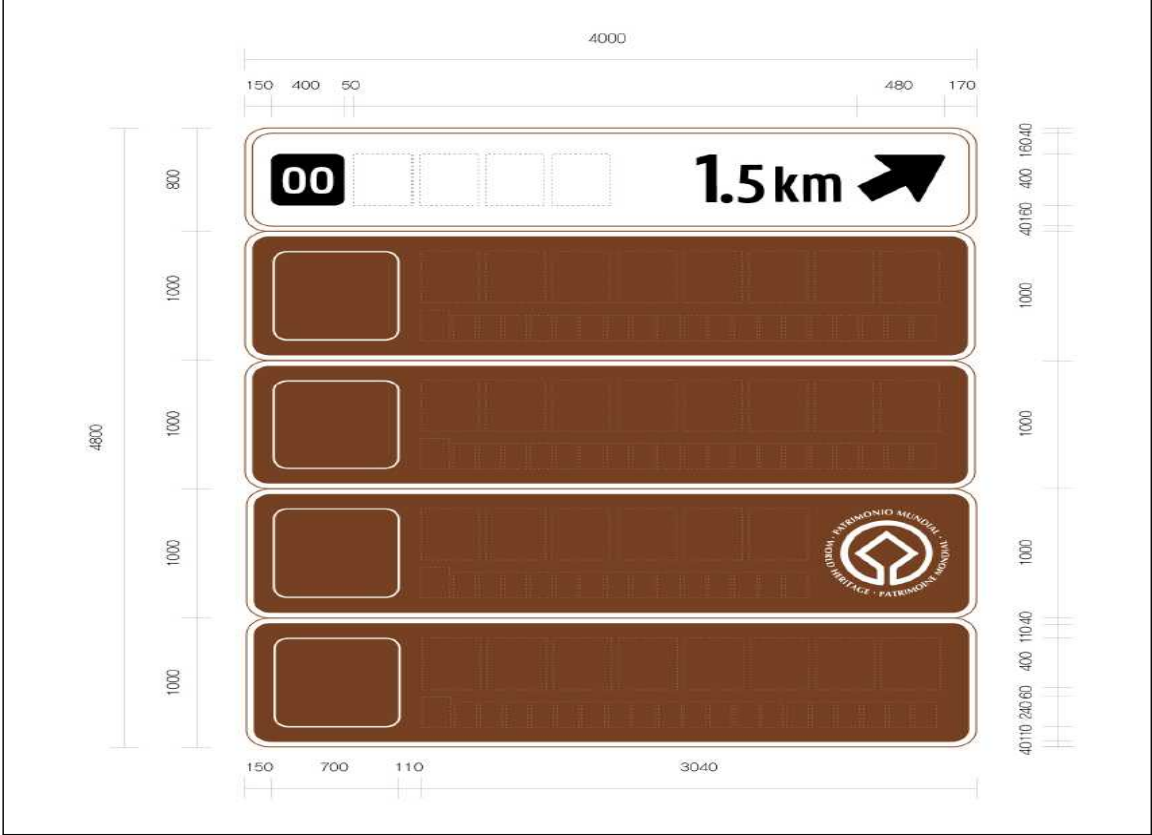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9 관광지표지 (세계문화유산/ 전통마을) |
| 상세규격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p>°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10 관광지표지 (2지명) |
| 상세규격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p>°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|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11 관광지표지 (3지명) |
| 상세규격 | |
| 설치방법 및 장소 | <p>◦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</p> <p>◦세계유산을 안내하는 경우 해당 안내지명 우측에 세계유산 상징그림을 표기한다.</p> |
| 비고 | |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지번호 및 명칭 | 438-12 관광지표지 (4지명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| |
|------|
| 상세규격 |
|------|



| |
|-----------|
| 설치방법 및 장소 |
|-----------|

◦438-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

비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7조(관광지표지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⑥ (생략)</p> <p>⑦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 지(IC) 출구의 <u>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.</u></p> <p>⑧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, 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<u>3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<u>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17조(관광지표지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----- ----- <u>1.5k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,</u>----- -----.</p> <p>⑧----- ----- ----- ----- <u>4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<u>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|